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컨설팅 안내



가지급금정리

■ 가지급금정리

가지급금정리, 지분이동, 정관개정 안내 : 세법 변경에 따른 정비, 보완

법인에서 가지급금의 문제

가지급금이 있다는 것은 법인 대표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적절한 이자를 수령해야 한다. 그런데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법은 받았어야 할 이자(인정이자)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거 법인의 익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그 금액을 상여로 처분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있고 금액이 과다하다면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게 된다. 또한 정책자금담당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여신취급이 어렵거나 높은 이자를 적용받는다. 세무상 규제 내역이 많고 규제 내역 외에 상속 발생 시에도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생기면 **예기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 상속 개시 당시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었다면 이는 대표가 현금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적절한 소명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게 된다.

가지급금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이다.

실제 현금의 지급은 있었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의 미확정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자산 항목에 해당된다. 가지급금은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그 확정계정으로 대체하여 정리해야 한다.

사원출장여비의 선급입체금, 계약선급금, 보증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가불금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가지급금 계정을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부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따른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제44조)

가지급금 문제의 해결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표이사의 유동자금이 없는 경우 법인의 자금으로 **합법적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법은 급여, 배당, 퇴직금 등 세 가지다. 세 가지 방법 중 퇴직금이 법인 입장에서나 대표자 입장에서 절세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보험회사에서 CEO퇴직금플랜을 홍보하는 것도 퇴직금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